

1. 개정이유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모두 요구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사람은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오남용 조회 방지를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식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뒤쪽의 민원인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 관련기관에도 해당되는 경우 취업(예정)자 본인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개정, 안 별지 제9호의4, 제11호의4서식 신설)
- 나.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한정하여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에 성범죄 경력조회 시 의료인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일부를 보완하고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오남용을 방지함. (안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서식 개정)
- 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뒤쪽의 민원인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안 별지 제11호, 제11호의2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은”을 “장, 취업자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9호의3서식,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따라”를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11호의3서식, 취업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으로 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나.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대상자란 중 “면허번호(의료인의 경우에만 해당)”란을 신설하고, 같은 쪽 운영 또는 취업정보란 중 “대표자 성명”과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며, 뒤쪽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란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 추가 기재”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청인란 중 “면허번호(의료인의 경우에만 해당)”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대상자란 중 “면허번호(의료인의 경우에만 해당)”란을 신설하고, 같은 쪽 운영 또는 취업정보란 중 “대표자 성명”과 “대표자 생년월일”란을 삭제하며 “조회용도”란을 신설하고, 뒤쪽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란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 추가 기재”로 한다.

별지 제9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제2호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부칙 제15352호 적용례)”로 하고 형 확정 시점란의 “2018. 9. 14. 이후”는 삭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 ※ 예시 : 제12345호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조회 용도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 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 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경찰서장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경찰서장	→	통보
---------------	---	-------------	---	----------------------	---	----

하고 대상기관의 종류란의 “⑩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의 제2호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

용시점·적용기간”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부칙 제15352호 적용례)”로 하고 형 확정 시점란의 “2018. 9. 14. 이후”

는 삭제하고 대상기관의 종류란의 ⑩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

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

소년대상 교육기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llegibl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 ※ 예시 : 제12345호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조회용도	[] 운영하려는 자용	[] 취업(예정)자용
		(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취업제한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 7. 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 12. 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부칙 제15352호 적용례)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 30. 이후	위험결정 이후*
①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 체육시설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 개인과의교습자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 장애인복지시설, 인터넷게임사업자, 인터넷·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 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 고등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행정안전부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자립교육시설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8. 7. 16.>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 국인등록번호/국 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 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 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취업제한 해당여부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 7. 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 7. 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 12. 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부칙 제15352호 적용례)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 30. 이후	형 확정 시점
①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 체육시설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 개인과의교습자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 강연·강의·강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게임·복합유통·게임·제공·청소년활동·기획·대중문화예술·기획·청소년게임제공·청소년실용·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 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 고등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5 년간 취업제 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전담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3년 이하 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 된 날부터 3 년간 취업제 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 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성 명	
신청인	기관명
운영·취업 기관 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주소 (전화번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해당 없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② (생략)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u>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장, 취업자 등은 ----- ----- . -- 경우 <u>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9호의3서식, 취업자들은 별지 제9호의4서식</u> ----- ----- ----- ----- . <u>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u> <u>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u>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 <u>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 상자의 동의서 1부</u>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u>제3항제1호</u> 단서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u>련기관등은 제외한다.</u> 나. <u>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 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u>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가. <u>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u> 나. <u>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 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 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 1부</u> ④ ----- ----- ----- ----- ----- --- <u>제3항제1호가목</u> ----- ----- ----- ----- ----- --- . ----- ----- -----
---	---

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에 따른다.

⑥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⑤ -----

-----.
-----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

-----.

⑥ -----

----- 제3항 전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
-- 별지 제11호의3서식, 취업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
--.

< 의안 소관 부서명 >

아동청소년정보보호과	
연 락 처	02-2100-6405